

(4) 가로수 수종으로 부적합한 것이 도처에 발견되고 있는바, 향후 계획수립시 부적절한 가로수는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다. 처리의견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93.1.20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2. 12. 2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 12. 9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2. 12. 10
- 다. 상정일자 : 제13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92.12.22)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석봉)

가. 제출이유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의료직공무원의 수당지급 기준이 타시도와 비교, 현저히 낮음으로 수당지급 체계를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고용직인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경력 년수에 따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1) 제2조의 제목중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업무등의 수당”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

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별표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2) 제3조(방법수당) : 신설

- ① 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하고,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경력 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월 8,000원-월 100,000원)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각 구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준칙을 시달하여 그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의료직공무원인 의사와 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들의 수당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윤동현위원) : 방법대원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 답변(총무과장 김석봉) : 신규채용은 현재 안하고 있음.
- 질의(유남렬위원) : 별표2의 전임전문직 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중 “가급”과 “나급”의 내용은?
- 답변(총무과장 김석봉) : “가급”은 “전문직”, “나급”은 “일반직”가 해당되는 것임.

5. 토론요지 : 방법대원등의 처우개선등 적절한 개정조치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일자 : 1992. 12. 9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의료직공무원의 수당지급기준이 타시도와 비교, 수당지급 체계가 달라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수당지급 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고용직인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경력 년수에 따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2조의 제목중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업무등의 수당)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나. 제3조(방법수당) : 신설

①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하고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 경력 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월 8,000원—월 100,000)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4. 개정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 (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

②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 구분표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방법수당) 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경력 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조는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4 급	월 609,000원	월 554,000원
5 급	월 609,000원	월 518,000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

전임 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별 등급별	가 급	나 급
	5 년 이 상	월 1,012,000원
4 년 이 상	월 1,006,000원	월 667,000원
3 년 이 상	월 1,000,000원	월 661,000원
2 년 이 상	월 995,000원	월 656,000원
2 년 미 만	월 989,000원	월 650,000원

비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별표3 」

방법수당가산금 지급구분표

자 율 방 범 원 경 력	가 산 지 급 액
1 년 이 상 2 년 미 만	월 8,000원
2 년 이 상 3 년 미 만	월 16,000원
3 년 이 상 4 년 미 만	월 24,000원
4 년 이 상 5 년 미 만	월 32,000원
5 년 이 상 6 년 미 만	월 38,000원
6 년 이 상 7 년 미 만	월 44,000원
7 년 이 상 8 년 미 만	월 50,000원
8 년 이 상 9 년 미 만	월 56,000원
9 년 이 상 10 년 미 만	월 62,000원
10 년 이 상 11 년 미 만	월 66,000원
11 년 이 상 12 년 미 만	월 70,000원
12 년 이 상 13 년 미 만	월 74,000원
13 년 이 상 14 년 미 만	월 78,000원
14 년 이 상 15 년 미 만	월 82,000원
15 년 이 상 16 년 미 만	월 84,000원
16 년 이 상 17 년 미 만	월 86,000원
17 년 이 상 18 년 미 만	월 88,000원
18 년 이 상 19 년 미 만	월 90,000원
19 년 이 상 20 년 미 만	월 92,000원
20 년 이 상 21 년 미 만	월 94,000원
21 년 이 상 22 년 미 만	월 96,000원
22 년 이 상 23 년 미 만	월 97,000원
23 년 이 상 24 년 미 만	월 98,000원
24 년 이 상 25 년 미 만	월 99,000원
25 년 이 상	월 100,000원

(다음 「 페이지 」 에 계속)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료업무수당) ①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직 공무원중 의사와 전임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이 지급한다.</p> <p>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①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1」의 지급구분표</p> <p>②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2」의 지급구분표</p>
<p>신 설</p>	<p>제3조(방법수당) ①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 경력년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일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	2 호	3 호	4호-나목	구분	전 문 의	일 반 의
의사	410,000	554,000	471,000	4급	월 609,000원	월 554,000원
				5급	월 609,000원	월 518,000원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중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중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호 봉	의사로서의 근무년한수	보건소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가급	나급			
1	3년미만	430,000	285,000	5년이상	월 1,012,000원	월 673,000원
2	3년이상, 6년미만	435,000	290,000	4년이상	월 1,006,000원	월 667,000원
3	6년이상, 9년미만	440,000	295,000	3년이상	월 1,000,000원	월 661,000원
4	9년이상, 12년미만	445,000	300,000	2년이상	월 995,000원	월 656,000원
5	12년이상	450,000	305,000	2년미만	월 989,000원	월 650,000원
비교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비교 : 근무년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방법수당가산금 지급구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자율방법원경력	가산지급액
	1년이상 2년미만	월 8,000원
	2년이상 3년미만	월 16,000원
	3년이상 4년미만	월 24,000원
	4년이상 5년미만	월 32,000원
	5년이상 6년미만	월 38,000원
	6년이상 7년미만	월 44,000원
	7년이상 8년미만	월 50,000원
	8년이상 9년미만	월 56,000원
	9년이상 10년미만	월 62,000원
	10년이상 11년미만	월 66,000원
	11년이상 12년미만	월 70,000원
	12년이상 13년미만	월 74,000원
	13년이상 14년미만	월 78,000원
	14년이상 15년미만	월 82,000원
	15년이상 16년미만	월 84,000원
	16년이상 17년미만	월 86,000원
	17년이상 18년미만	월 88,000원
	18년이상 19년미만	월 90,000원
	19년이상 20년미만	월 92,000원
	20년이상 21년미만	월 94,000원
	21년이상 22년미만	월 96,000원
	22년이상 23년미만	월 97,000원
	23년이상 24년미만	월 98,000원
	24년이상 25년미만	월 99,000원
25년이상	월 100,000원	

(다음 「페이지」에 계속)